적정성 원칙 투자자 확인서

• '계약권유(투자권유) 하지 않음' 확인

○ 본인은 본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, 하나은행으로부터 어떠한 계약(투자)권유를 받지 않았고, 상기 계약이 본인의 소신으로 결정된 것으로서,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(적합성원칙), 제19조(설명의무)에 따른 의무를 하나은행이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.

○ 하나은행으로부터 계약(투자)권유 없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원금손실 가능성,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○ 또한 본 거래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업무처리는 하나은행이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.

• 고객별 적합한 파생상품 보다 높은 위험의 파생상품 선택 확인

본인은 '장외파생상품용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'에서 확인한 고객분류가 (　　)등급임을 고지 받았으나, 본인에게 적합한 위험수준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합니다.

본인은 하나은행으로부터 본인이 특정한 장외파생상품의(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), 해당 상품의 투자 위험 정도가 본인의 투자목적,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해 높아 본인에게 부적합하므로 하나은행이 이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,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부적정성에 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통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.

그럼에도 (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) 본인이 특정하는 장외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합니다.

특정 상품명 : (　　), 상품위험단계 : (　　)

고객 등급		상품위험단계		
개인	법인	주의	경고	위험
A등급	-	- 이자율 스왑 - 옵션매수	X	X
B등급	B등급	- 이자율 스왑 - 옵션매수	- 통화선도 - 통화스왑	X
C등급	C등급	- 이자율 스왑 - 옵션매수	- 통화선도 - 통화스왑	- 기타

※ 통화옵션은 상품위험단계 **위험** 상품임

• 본인은 본 자료를 (수령) 하고 자료의 (내용) 에 대해 (설명) 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.

작성일자:　　년　　월　　일

고 객 명:　　(인감/서명)

법인등록번호/생년월일:

5-09-0510(1-1) (2021.10 제정)
(보존년한 : 완제일로부터 10년)

하나은행